

# 서울특별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16일  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곽향기, 김영옥, 김영철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지향, 김춘곤, 김혜지,  
문성호, 박 석, 박성연,  
박영한, 박환희, 서준오,  
소영철, 송경택, 심미경,  
윤영희, 이병운, 이소라,  
이승복, 이영실, 이종태,  
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서울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의 대상 구체화(안 제5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

## 서울특별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
5.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사전심의 의무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</p>	<p>제5조(사전심의 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</u></p> <p>5. <u>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</u></p> <p>6.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</p>